

# 래미안 포레스티지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## [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(울산광역시)]

-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해당 신청일에 대상자 본인이 직접 한국부동산원 청약홈([www.applyhome.co.kr](http://www.applyhome.co.kr))에서 인터넷 청약접수를 해야하며, 미접수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함.
  - \*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견본주택 접수가 가능하며, 해당 신청일 10:00~14:00 까지만 접수 가능.
-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된 특별공급 대상자(예비추천자 포함)에게 특별공급 청약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으며, 선정된 특별공급 대상자가 청약 접수안내를 받지 못하여 청약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 36 조 및 제 4 조 제 3 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[2021.12.31.(예정)]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함.
- 신청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, 청약신청 및 동·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, 당첨일부터 '수도권 및 투기·청약과열지역 1년, 수도권외의 6개월, 위촉지역 3개월'(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) 동안 다른 분양주택(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)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.
-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므로, 해당 기관에서 특히 '신청자격' 및 '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'를 충분히 안내, 검증 받으시기 바람.
-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「주택법」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,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(단,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)이 부과될 수 있음.
- 위장전입, 허위문서 제출 등을 통한 부정당첨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,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가 될 수 있음
- 본 아파트는 「주택법」 제 64 조 및 「주택법시행령」 제 73 조 규정에 의거 최초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(당첨자발표일)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(다만,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함) 전매가 금지됨. (단, 「주택법」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-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[2021.12.31.(예정)]에 래미안 홈페이지(<https://www.raemian.co.kr>)에서 래미안 포레스티지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.

### 1. 공급개요 및 주요일정(예정)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
| 공급위치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00-13 번지 및 금정구 장전동 511-2 번지 일원  |
| 공급규모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아파트 지하 6층, 지상 35층 36 개동 총 4,043 세대<br>[조합 1,492 세대(보류지 9 세대포함), 임대주택 220 세대] 중 아파트 일반공급 2,331 세대 |
| 주요<br>일정<br>(예정) | 입주자 모집공고       | 2021년 12월 31일(금) 예정  |
|                  | 사이버 견본주택<br>개관 | 2021년 12월 31일(금) 예정 ( <a href="https://www.raemian.co.kr">https://www.raemian.co.kr</a> )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특별공급 청약접수      | 2022년 01월 13일(목) 예정  |
|                  | 당첨자 발표         | 2022년 01월 24일(월) 예정  |

- ※ 상기 주요일정은 사업추진 인·허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,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 및 대표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.
- ※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이 제한될 수 있으니, 사이버 견본주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람.

## 2.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[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]

| 주택형       | 약식 표기 | 일반분양 세대수 | 공급면적(㎡) |         |          | 특별공급 배정세대수 |         | 비고 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|
|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주거전용    | 주거공용    | 소계       | 대상자        | (예비추천자) |     |
| 084.9849A | 84A   | 467      | 84.9849 | 32.8312 | 117.8161 | 1          | (3)     | 관상형 |
| 084.9963C | 84C   | 473      | 84.9963 | 32.7064 | 117.7027 | 1          | (3)     | 타워형 |
| 소계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2          | (6)     |     |

※ 84 타입의 경우 기존 승인 및 설계도서 상 표기방식을 청약홈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

▪ 84A1→84A, 84A2→84B, 84B1→84C, 84B2→84D, 84C1→84E, 84C2→84F

※ 배정세대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

※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의 '주택형'으로 청약하여야 하며, 동호수 배정은 각 '주택형' 별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입주자 선정 시 무작위로 결정되므로,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 26 조의 2 에 의거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(예비추천자)를 선정하며, 당 사업지는 청약과열지역으로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은 **300%임**

※ 예비입주자(예비추천자) 추천 여부는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고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음.

※ 기관별·주택형별 세대수 배정은 기관추천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주체가 적의 배정함.

## 3.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

### ■ 신청자격
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 36 조 제 8 호 중 제 35 조 제 1 항 제 17 호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(지적장애인,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) 해당 하시는 분으로  
입주자모집공고일[2021.12.31.(예정)]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신 분
- 특별공급 대상자 청약통장 가입요건 : 청약통장 불필요

※ 2018.12.11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2의3호, 제2조 제4호에 의거 '세대' 및 '무주택세대구성원'의 정의가 변경되었음.

- “세대”란, 다음 각 목의 사람(이하 “세대원”)으로 구성된 집단(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)
  - 가. 주택공급신청자
  - 나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
  - 다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: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. (예) 부·모, 장인·장모, 시부·시모, 외조부·외조모 등
  - 라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 :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. (예) 아들·딸, 사위·며느리, 손자·손녀, 외손자·외손녀 등
  - 마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: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. (예) 전혼자녀
- “무주택세대구성원”이란,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

## 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
- 입주자모집공고일[2021.12.31.(예정)]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
-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(특별공급은 1세대 1회의 기준으로 공급하며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임)
-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

## ■ 당첨자 선정방법

-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조건을 갖춘 자는 우선하여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.
-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(예비추천자 포함)로 선정된 자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신청일[2022.01.13.(예정)]에 반드시 청약접수 하여야 하며,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함.
-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, 동·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·호수를 결정함.
-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예비추천자 및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함.

## 4. 기타 유의사항

-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및 금정구는 비투기과열지구이나 **청약과열지역**으로, 관계법령에 따라 중도금 대출 LTV에 제한이 있으며, 개인의 주택소유(분양권 등 포함), 대출유무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,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음.  
**사업주체는 고객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.**
-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,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함. 단, 본인이 동일 아파트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. (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)
-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의 특별공급은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,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(부부 포함)이 중복 신청하는 경우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으로 당첨취소 처리됨.
- 공급금액, 재당첨제한, 전매제한, 공급대상 주택형 등 세부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,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.
- 신청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건본주택, 인쇄제작물 및 래미안 홈페이지(<https://www.raemian.co.kr>)에서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.
- 기타 청약관련 문의사항은 ‘래미안 포레스티지’ 대표번호(051-867-404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.

## 5. 견본주택 오시는 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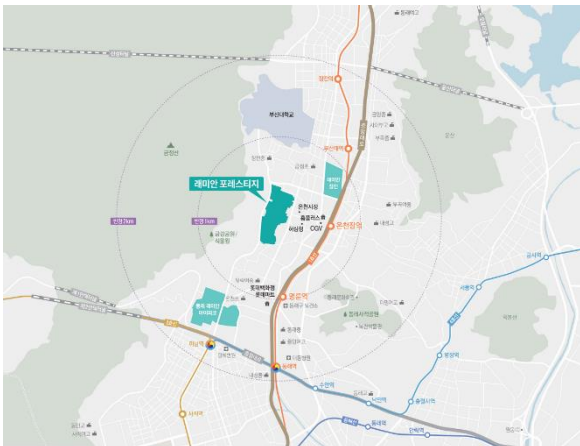


- 주소 : 부산광역시 연제구  
거제천로 182 번길 3, 3 층  
래미안 포레스티지 견본주택
- 지하철 이용시 : 연산역(1,3 호선)  
7 번출구에서 약 400m
- 대표번호 : 051-867-4043

※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이 제한될 수 있으니, 사이버 견본주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6. 위치도 및 조감도

위치도



조감도



※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.